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 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473
----------	-----

2016. 10. 10.(월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임순묵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9월 27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0월 10일

(제35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임순묵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·징수 권한이 시장·군수에게도 있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 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으로서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」를 폐지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경형)

가. 검토내용

- 1999년 4월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되어 해당 법률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시장·군수에게 부여하였고,
-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,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은 그 사무를 위임받은 해당 시·군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.

나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 권한을 이미 1999년에 시장·군수에게 부여하였고,
-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도 해당 법령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473 호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[지방재정법]

제32조(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)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자동차관리법]

제74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1조, 제45조의3제1항,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, 자동차검사대행자, 종합검사대행자,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(이하 "정지처분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3.8.6.>

[자동차관리법 시행령]

제15조(과징금의 부과·징수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(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2.12.31., 2007.12.31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7.29., 2008.2.29., 2013.3.23.>

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6.6.28.>

⑤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. <개정 2016.6.28.>

⑥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.

참 고 자 료

충청북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

(일부개정) 2001-02-09 조례 제 02641호

(일부개정) 2010-06-30 조례 제 3265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1. 2. 9)

제2조(과징금의 납부기한) ① 도지사는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「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」 별지 제35호서식의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1. 2. 9, 2010. 6. 30>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.

제3조(과징금 처분대장) 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한다.

제4조(부과·징수사무의 위임등) ① 도지사는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(내부위임 포함)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징수액의 30/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과징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2. 9 조례 제2641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0. 6. 30 조례 제3265호)(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